데이터 기본법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82

발의연월일: 2020. 12. 8.

발 의 자:조승래·서영석·이용빈

정필모 · 임호선 · 정태호

홍정민 · 강선우 · 정성호

김철민 · 양정숙 · 한준호

전혜숙 • 윤영찬 • 변재일

유정주・홍성국・황 희

김경협 · 강훈식 · 김홍걸

이소영 · 이용호 · 황운하

이낙연 • 박범계 • 고용진

김경만 · 노웅래 · 강병원

박홍근 • 이광재 • 김상희

이원욱 의원(34인)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반에서 창출되는 데이터가 수집·가공·생산·활용되어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데이터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및 인공지능(AI)과 융합·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 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임.

특히,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진흥 기본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이에 데이터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함(안 제1조).

- 나.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결합, 가공 및 활용하기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영상・음성・음향등의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9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10조).
- 바. 데이터 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자 산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 사.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을

신설함(안 제13조)

- 아.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이동권을 도입함(안 제15조).
- 자. 개인인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데이터를 통합하여 그 데이터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함(안 제16조).
- 차. 정부가 데이터 거래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카.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거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 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거래사에 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파. 정부가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제33조).
- 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5조).

데이터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 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결합, 가공 및 활용하기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영상・음성・음향 등의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것을 말한다.
-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 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 4.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거래 등과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 다.
- 5. "데이터주체"란 처리되는 데이터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6.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7. "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의 생산·거래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8. "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9. "본인데이터관리업"이란 개인인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경제적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결합, 가공 및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말한다. 다만, 개인데이터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로본다. 이하 같다)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데이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데이터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10. "개인데이터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데이터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 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데이터의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 2.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3.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데이터 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 5.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6.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7.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데이터사업자 육성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 8. 데이터산업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 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 가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사항
 - 3.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 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 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2. 데이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한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⑥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 사무국을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재원의 확보)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데이터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데이터 생산 및 보호

-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 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부터 제3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데이터결합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과 시행

- 2. 산업 간 데이터 전문인력의 교류 활성화
- 3. 결합 데이터의 거래·활용을 위한 사업
- 4.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
- 5. 그 밖에 데이터 결합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및 추진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 방안,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1조(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 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데이터안심구역 운영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

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데이터 자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 자산"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생산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2. 데이터 자산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데이터 자산을 취득, 사용 또는 타인에 게 제공하는 행위
 - 3.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 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분석을 위한 이용) ① 데이터를 이용(복제, 전송, 개작 등) 한 정보분석(컴퓨터에 의한 자동화된 분석기술을 통해 타인의 문자,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 트렌드,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등이 인간이 감상하거나 향수하려는 저작물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분석의 대상이 개인데이터인 경우에는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데이터
 -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 다. 데이터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

를 통하여 공개한 데이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데이터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분석의 결과는 저작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데이터분석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보존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

-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데이터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평가기관은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 음 연도 1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평가 대상
- 2. 평가 범위
- 3. 평가 수수료
- ⑧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데이터 이동권) ① 데이터주체는 매출액, 저장·관리하는 개인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주체의 규모, 처리하는 개인데이터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데이터처리자에 대하여 그가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데이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해당 데이터주체 본인
 - 2. 본인데이터관리회사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데이터처리자
-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데이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해당 데이터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개인데이터처리 자 사이에서 처리된 개인데이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일 것
 - 가. 개인데이터처리자가 데이터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 나. 데이터주체가 개인데이터처리자에게 제공한 정보
 - 다. 데이터주체와 개인데이터처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 성된 정보
-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개인데이터일 것
- 3. 개인데이터처리자가 개인데이터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 공한 개인데이터가 아닐 것
-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데이터의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데이터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3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5. 「의료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 ④ 제1항에 따라 데이터주체 본인이 개인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데이터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개인데이터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데이터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데이터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한다.
- 1. 개인데이터처리자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데이터
-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제3항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제공한 개인데이터처리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데이터의 전송 사실을 해당 데이터 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3. 그 밖에 개인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 ⑦ 데이터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데이터의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데이터처리자는 데이터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본인데이터관리업) ①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1. 재정과 기술적 능력
 - 2. 이용자 보호계획
 -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본인데이터관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법인의 정관 및 이용약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 이 있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본인데이터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본인데이터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시장 내에서 대기업사업자와 중소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데이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

- 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데이터 거래 시장에 관한 현황 분석 및 평가
- 2. 데이터 거래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3.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 4. 그 밖에 공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장 데이터 유통 · 거래 촉진

- 제18조(데이터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유통 및 거래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유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통 및 거래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방법 및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데이터거래소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하 "데

- 이터 거래소"라 한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등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표준계약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

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2조(데이터거래사업자의 신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거래사업자에게 기술인력 및 사업 수행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자문·지도 업무 및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 등 데이터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 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수반하여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데이터 기반 상품·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의 발굴·실행 및 테스트베드의 운영
 - 2. 데이터 기반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 3. 데이터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 4.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기업을 위한 상담과 관련된 사무의 지원
 - 5. 데이터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 ②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제4조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1.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
 - 2.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방 안
 - 3.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 4. 데이터 전문인력의 고용창출 및 고용연계 지원 방안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직무표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관련 자격 또는 신직종의 정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이 「자격기본법」 제6조의 자격체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법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의 운영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술의 발전목표 및 산업에의 적용 방안
 - 2.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 3.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산업계·학계·공공기관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연구의 촉진 방안
 - 4. 기술 연구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 5. 국제협력의 촉진
 - 6.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 제2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기반 산업을 촉진하고, 이 법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 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이전 방식
 - 2. 데이터의 분류 체계
 - 3. 그 밖에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

- ·개발, 국제 표준화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표준화 활동에 필요 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9조(국제협력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국 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단 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30조(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거래 및 활용에 기반한 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데이터사업자에게 보 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1조(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 이 법에 따라 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중소기업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한편, 데

- 이터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의 거래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경영·기술·재무·회계·인사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데이터 자산의 임치 지원) ① 데이터사업자는 전문 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데이터 자산을 임치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의 임치와 관련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운영) ①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 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및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및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

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협회의 설립) ①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기반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 개선, 기술개발 협력 및 데이터 거래 및 활용 문화의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분쟁조정

제35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 그 밖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 ③ 조정부의 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지명하되, 제3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 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 다)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 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 로 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除 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38조(자료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9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 1. 제36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 2.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 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 2.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1조(조정의 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수 있다.
- 제42조(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보칙

- 제43조(손해배상청구 등) ①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44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데이터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데이터사업자 등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시정권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데이터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워으로 본다.
 - 1.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5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 직원
 - 3.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 원
-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데이터 자산을 취득·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생산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 한 자
 - 2. 제1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 자산을 취득·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
 - 3. 제1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자
 - 4.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데이터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한 자
 - 6.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8.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
- 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